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INSTITUTE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CONTENTS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1. 학교폭력 예방-----	1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3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6
4.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8
5. 아동학대 예방-----	10
6. 실종 및 유괴 예방-----	13
7. 성폭력 예방-----	14
8. 청소년 도박 예방-----	15
9. 약물 중독 예방-----	16
10. 장애이해와 통합교육-----	18
11. 2022 개정 교육과정 -----	20
12. 출결-----	22
1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24
14. 학생 봉사활동-----	25
15. 학교운영위원회-----	27
16.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8
17.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29
18.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30
19. 초등 방과후·돌봄-----	32

학교폭력 예방



세바시 강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 례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두하 언행(조롱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욕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건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고평시이나 분아같은 으박하는 문자, 으하, 으하 등 으하포 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바보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가정에서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헐뜯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폭력)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안내(신고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 고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교외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 례
공무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립학교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닦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업무방해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사립학교의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위협하는 경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생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상해/폭행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개인의 가정사를 유포하는 경우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교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교사의 얼굴을 촬영·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사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에도 해당됨)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허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교육활동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속적·반복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사의 직무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하다 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폰을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자녀가 원격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보호자 함께 참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나 문자, 학교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규제 대상과 범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 학 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 학 생	교과 평가 (지필· 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Q&A로 알아보는 공교육정상화법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학기의 단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에 반드시 제시하고, 반드시 정보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2학년의 교육과정을 1학년으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므로, 학년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반영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이 정보공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초6~중1, 중3~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전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늘봄 학교(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수원교육지원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 (벌칙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Q&A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소년단체·방과후 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 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아동학대 예방



대한민국 대법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 왕따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아동 정서 발달,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감금, 약취, 아동노동 착취)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화: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관할 경찰서, 시·도, 시·군·구
- ※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비공개, 보호조치 가능

● 신고내용

- 아동의 인적사항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등
-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등)

● 신고 시 주의사항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신고 지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아동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양육 129원칙



1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 방법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종 및 유괴 예방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안전 수칙

낯선 사람 대하는 방법	- 음식, 선물 등을 주는 경우에도 부모님 허락 없이 아무도 따라가지 않기 “도와달라” 며 접근하는 어른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급 상황 행동 3단계	- 멈추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제자리에서 멈추기 - 생각하기: 이름, 주소, 연락처 떠올리기 - 도움 요청하기: 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도움 요청하기
차량, 밀폐 공간 안전 수칙	- 차량 접근 시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엘레베이터는 혼자 타지 않고, 혼자 탑승 시 비상벨 근처에 자리 잡기
온라인 안전 수칙	- 온라인(게임, 채팅 등)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름, 학교, 사진, 주소 등 알려주지 않기 - 부모님 몰래 비밀 친구 하지 않기

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예방 조치

지문 등 사전정보 등록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통해 사진, 지문 등을 자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하기
자녀에 관한 정보 기억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 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 알아두기
생활 동선 및 안전지대 점검	- 통학로, 학원, 놀이 공간 등 자녀의 이동 경로 확인, 위험 지점 파악하기 - 아동안전지킴이집, 경찰서 등 안전 지점 함께 확인하기

실종 및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즉시 신고 및 초기 조치	112 또는 182에 즉시 신고하기 - 한 보호자는 마지막 목격 장소 대기, 다른 보호자는 주변 탐색하기 - 대형 시설에서는 안내 방송 부탁하기
경찰 협조를 위한 정보 제공	- 자녀의 당일 복장, 최근 사진, 특징 정보 즉시 전달하기 - 자주 가는 장소, 친구나 지인의 위치 등 추적 단서 제공 및 CCTV 확인 요청하기
사전등록 정보 활용	지문 사전 등록 시 신원 확인 시간이 단축되므로 지문 사전 등록 상황 알리기

성폭력 예방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이란?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자기 결정권: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권리(헌법 제10조 근거)

성폭력의 유형

- 성폭력은 ①형법상 범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로 구분

관련 법률	범죄 사례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음행매개, 통신을 이용한 음란, 특수강도강간 등
청소년보호법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매매행위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매매 행위, 성을 사는 행위, 강요, 알선 영업, 성착취 목적 대회(제11조~제15조)를 제외한 행위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법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신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 친구가 성적인 행동을 하려 하면 NO라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하세요.
- 상대방의 침묵을 예로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협박이나 강요 등을 당할 때에는 겁먹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알려주세요.
- 자녀가 건전한 성 가치관과 자신의 신체적 성장에 대해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범죄 피해 신고 지원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ecrm.police.go.kr)
-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청소년 도박 예방



한국도박문제예방치
유원

도박의 개념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임들이라도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이 합쳐지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의 위험성

- 도박중독: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 대인관계 갈등, 심리적 문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 심리적 의존, 통제력 상실, 내성, 금단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 전체가 붕괴될 수 있음

청소년의 도박중독 징후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줌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함
- 스포츠 경기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됨
- 집안의 물건이나 현금이 없어짐
- 자주 용돈이 부족하다고 함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도박문제 전문 상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무료), 전화상담(1336), 문자상담(#1336)

약물 중독 예방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마약류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짐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의 증가
 - 마약류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나 사람을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마약류와 관련된 자극적 용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마약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연루 위험성
 - 성장기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중독에 이르는 속도도 훨씬 빠름.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범죄 연루 위험성도 높아짐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만성 뇌 질환
 - 중독은 뇌의 변화가 일어난 만성질환으로서 치료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함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수칙

-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마약류 예방 도움 받을 곳

- 상담 및 교육기관: 한국마약퇴치본부 1899-0893
 - 지원내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재활 및 지원
-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 입원,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마약범죄 신고기관: 경찰 112, 검찰 1301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

- 발암물질과 독성 및 유해물질 포함
 - 담배에는 나프틸아민, 벤젠, 비소, 벤조피렌, 니켈, 크롬, 카드뮴 등과 같은 제1 발암물질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니코틴, 아세트산, 아세톤 등 7,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물질을 포함
- 암 발병률 상승
 - 니코틴에 일찍 노출될수록 그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과 관련된 암 발병률 상승
- 약물 중독 초래
 -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사용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정신건강 문제
 -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 좌절 등 부정적 정서상태일 때 흡연을 통해 일시적 완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감정조절에 있어 약물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간접흡연의 위험성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류연에 포함된 많은 유해 물질 흡입
 -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부류연에는 흡연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성
 -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심장, 혈관계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 증가
-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 중 28%가 아이들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부모에 의해 3차 흡연에 노출된 자녀는 중이염, 기침, 호흡기 증상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킴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위험
 - 전자담배 연기는 고농도의 초미세입자로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있음

금연 도움 받을 곳

●상담 및 교육기관: 금연 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1544-9030

장애 이해와 통합교육

행복한 학교를 위한 세 가지 약속(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약속해 주세요.

- 하나, 친구의 ‘다름’을 이유로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습니다.(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금지)
- 둘, 수업이나 놀이에서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합니다.(교육활동 참여 보장)
- 셋,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배려합니다.(정당한 편의 제공)

모두에게 편리한 학교(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물을(Barrier) 없애는(Free) 것을 말합니다. 배리어 프리가 장애인에게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처음부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는 장애가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다리를 다친 친구나 무거운 짐을 든 선생님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롭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통합교육: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배웁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어울리며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모든 친구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교육입니다.

- 물리적 통합: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소속감을 느낍니다.
- 사회적 통합: 함께 놀고 대화하며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 교육과정적 통합: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으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통합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나와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 친구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리더십을 배웁니다. •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운동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이 촉진됩니다. • 다양한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래들과 우정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아존중감이 향상됩니다.

● 통합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 Q&A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마다 필요한 지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는 경험은 비장애 학생에게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소리 지르기 등)을 따라 하면 어떡하죠?

▶ 아이들은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내기보다는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점심시간에 반찬을 먹기 싫어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면 더 적절할지(“먹기 싫다고 말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Q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어떻게 지내라고 알려주면 좋을까요?

▶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거나 특별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가정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 만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 어떻게 적절히 반응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마음입니다.

Q 자녀가 특수학급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개별화교육에 따라 공부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다양한 교류나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특수학급에 대해 질문했다면 특수학급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려 줍니다.
· 장애로 학습에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학교의 다양한 친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수학급을 ‘특별반’, ‘장애인반’ 등으로 부르거나 설명하기 보다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정확한 반 이름과 함께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비전 및 초등학교 목표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적용, 2025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적용, 2026년은 초등학교 5-6학년 적용되며 2027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을 추진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학습자 맞춤형 교육강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인간상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수리력, 디지털·인공 지능 기초 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

진로연계교육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교과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강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강화,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 지원

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교자율시간	•지역 연계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시간
학교자율시간 운영	•학교는 한 학기 17주 기준의 수업량을 16주로 유연화하여 학기별 1주의 자율 수업 시간 확보 가능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또는 활동)을 개설 후 학교자율시간에 운영 가능

라.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역량 함양 중심 교과 교육과정 개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와 문제 해결 및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한 학습의 질 개선
빅데이터·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등 원격수업을 반영한 총론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교육과정 지원 체제 구축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업무 분담 및 협조 체제 강화

초등학교에서의 변화

초등 저학년 한글 해득 지원, 안전교육 개선, 신체활동 강화

【맞춤형 교육】

●입학 초기(초1-1)

-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한글 깨치기, 익힘 학습 등 기초학습 토대 마련과 학교생활 이해를 위한 심리·정서적 도움 제공

●안전교육 개선

- 기존의 ‘안전한 생활’ 내용을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재구조화하여 교과와 연계한 생활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운영

●진로연계교육

-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진로 탐색, 상급학년(교) 준비 활동 운영

●놀이·체험형으로 컴퓨터 사고력 키우기

- 초등 ‘정보 교육’ 시수 17차시 → 34차시 확대

【학교별 자율화】

-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선택과목(또는 활동) 신설 및 운영 가능

- 학년별 선택과목을 2개 이내 운영 가능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년별, 학기별 교과 집중 이수 가능

출결

-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출석

- 개별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도 재적교 수업일수의 2/3 이상
- 출석 인정 결석은 출석 일수에 포함하며,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 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2/3 이상이면 수료 가능
- 당해 연도 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 변동일까지의 출석 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 변동일 이후의 출석 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2/3 이상이면 수료 가능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결석 일수는 제외

결석

가. 출석 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나.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미인정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9시까지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별도로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

운영 내용

● 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출석 인정 기간: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
- 운영단위: 1일 단위로 운영,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 가능

※ 출석인정일수, 불허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운영 절차

신청·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출석 처리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실시 ※ 학생 안전 확인		•보고서 제출 •면담등을 통한 사실 확인		•출석 인정 •서류 보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 체계 유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승인 및 보고서 제출 가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생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실적 인정

-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 실시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인정기준(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은 최대 8시간임)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 인정(만16세이상)

- 학생봉사활동 인정 관련 유의사항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활동비(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는 인정 불가
- 선फल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초 40자, 중 50자,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후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실적 연계 전송	▶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	▶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 확인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활동, VMS, DOVO)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학생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 1365 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https://www.vms.or.kr>

● DOVO (청소년자원봉사), <https://www.youth.go.kr>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기구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설치·운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자격기준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공립)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사립)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자중교장이위촉 ※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됨
지역위원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사업자, 해당 학교 졸업자 등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심의사항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립의 경우 자문사항)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사립의 경우 심의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사립의 경우 심의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는 열람 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 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앱스토어, Play스토어 등에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 검색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학교안전사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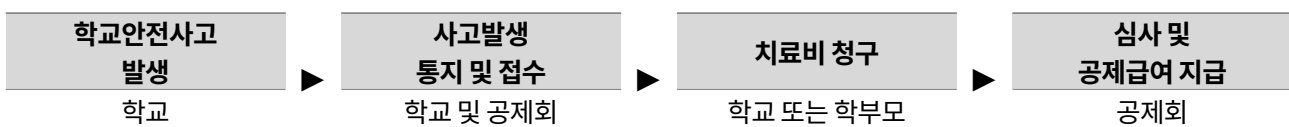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안전사고 종류

교육활동	질병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학교내·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절차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준비 서류(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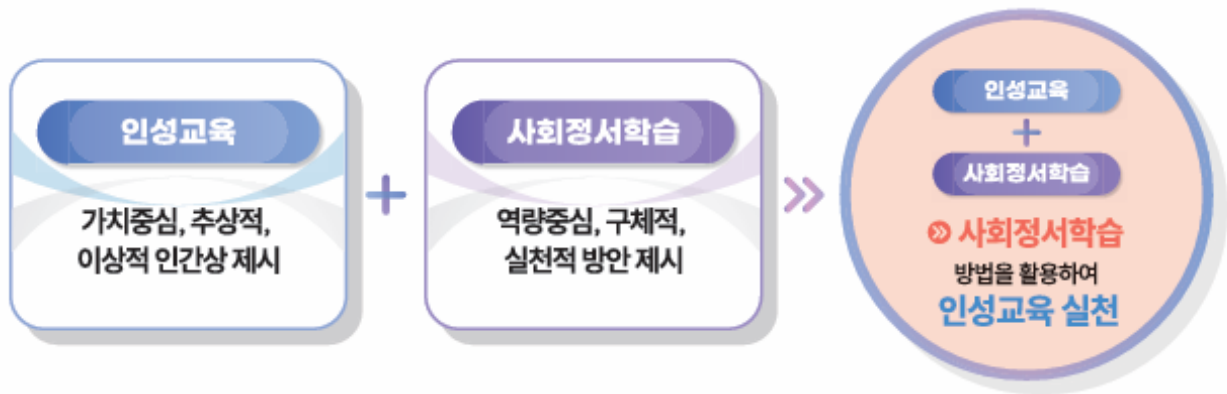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이란?

경기 사회정서역량(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사회적 협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



경기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모델 및 5대 역량

● 경기 사회정서학습 모델



● 경기 사회정서학습 5대 역량

자기 인식	자신의 감정, 사고, 가치, 문화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 및 성장가능성을 인식하는 능력	① 감정 인식 ② 가치 성찰 ③ 성장 지향
자기 관리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동기와 주도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	① 감정 조절 ② 자기 동기화 ③ 목표 설정과 실행
사회적 인식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구조와 공동체 규범의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	① 공감과 이해 ② 사회적 감수성 ③ 다양성 존중
사회적 협력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다양성을 실천하며,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① 사회적 소통 ② 공동체 참여 ③ 협력적 문제해결
책임 있는 의사결정	다양한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문제를 이해하고, 배려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윤리·사회적인 영향을 성찰하며, 근거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① 문제 이해 ② 역할 성찰과 영향 평가 ③ 합리적 판단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방법

● 친밀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요

- 1일 1칭찬의 시간 갖기
- 온 가족이 함께 가훈 만들기
- 스마트폰 없는 날 실천하기
- 가정 내 가족의 날 운영하기
- 가족이 함께하는 공감 소통데이 운영하기

●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시해요

가족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익히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상식과 지식을 섞어 문화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 하버드대 연구 결과

- 주 1회 이상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 배려가 있는 대화의 시간 갖기 (1일 1주제 정해서 생각 나누기)
- 예절 교육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자녀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나누어요

- 자녀의 행동에 담긴 마음 읽어주기
-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기
- 자녀와 부모의 소통은 나 메시지 로 하기

너 메시지 표현	나 메시지 표현(행감바)
네 옷을 제대로 벗어 놓아야지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	•(행동) 입었던 옷이 여기저기 널려있으니 거실이 지저분해서 •(감정) 엄마 마음이 심란해 •(바람) 벗은 옷은 옷걸이에 걸어두면 좋겠어

초등 방과후 · 돌봄

방과후 · 돌봄이란?

방과후 · 돌봄은 **학교 계획에 따라** 정규 수업 이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입니다. 이는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학생 ·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경기형 방과후 · 돌봄 모델



- **학교중심형**: 단위학교 중심 학생맞춤형 방과후·돌봄
- **지자체협력형**: 학교(공간) + 지자체(운영) + 교육청(프로그램)
- **지원센터 중심형**: 교육지원청 중심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형**: 학교·지역 공간 등 활용, 온동네 돌봄·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 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 돌봄	방과후	초1~2맞춤형	▶초 1, 2학년학생의특성을고려하여적응, 놀이 · 체험, 학습활동으로 편성 · 운영(매일 2차시)하는무상맞춤형프로그램
		초3이용권	▶초 3학년대상희망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방과후프로그램무상 이용권제공
		수익자	▶초 1~6학년학부모 · 학생의수요등을기반으로정규수업외시간에 편성 · 운영하는수익자프로그램
	돌봄	아침, 오후, 저녁 돌봄	▶초 1~6학년(초 1~2학년우선) 대상으로아침, 오후, 틈새, 저녁시간에 심, 놀이를제공하는초등보육전담사등이운영하는무상돌봄 프로그램

참여 방법

-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신청 안내장 배부

●재학생: 각 학교별 알리미를 통해 안내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2025 지역교육담당관 정책추진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함께해요
-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 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4 (학부모용)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 경기도교육청, 2024 부모 학부모가 되다(초등)
- 경기도교육청, 2023 통합교육 톺아보기(초등)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 학교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 대구광역시교육청, 2025 자녀교육 가이드북(특수교육)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202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학부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04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선행교육예방을 위한 연수자료
-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 에듀에이블, <https://www.nise.go.kr/main.do?s=eduable>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24.or.kr>
-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
- 안전Dream(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s://www.safe182.go.kr/index.do>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성인편) 2020